

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22호서식] <신설 2023. 12. 29.>

[시행일: 2025. 1. 1.] 통합관리사업자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1항 각 호의 중소기업자인 경우

##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증 발급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일자	처리기간 30일
------	------	------	-------------

신청인	성명(한글)	
	생년월일	전화번호
	주소	

「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### 환경산업협회장 귀하

첨부서류	1.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취득교육 이수확인증 2. 「국가기술자격법」 제13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의 사본, 경력증명서 등 별표 14의4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의 자격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3.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(3 × 4센티미터) 사진 1매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---

#### 처리절차

